

# 「2025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통합공고

「2025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을 위한 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024년 10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모집개요

### □ 목적

- '25년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선정된 7개 지자체의 후보특구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후보군) 공개모집

### < 2025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현황 >

후보특구명	실증사업명
경북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등급분류 실증 ▶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재제조 실증 ▶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재사용 실증
광주 첨단재생의료	▶ 첨단재생의료 실증 R&D 및 실증 지원 ▶ 첨단재생의료 실증센터 구축 및 운영
대전 우주항공	▶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AI 모델 활용 실증 ▶ 우주항공 부품 기준 정립 실증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 중대형 선박용 Truck to Ship 벙커링 안전기술개발 및 실증 ▶ 중대형 선박용 Ship To Ship 벙커링 안전기술개발 및 실증
전남 소형 e-모빌리티	▶ 전기이륜차 ▶ 초소형전기차 ▶ PM(전기자전거, 고령친화이동기기)
전북 기능성식품	▶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 AI&빅데이터 기반 건강기능식품 신속 사업화 실증
제주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	▶ 수소 기반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 지자체별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고문 참조

## □ 지원내용

-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 신속확인(법 제8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실증특례 (법 제86조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

-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임시허가 (법 제90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지자체별 지원프로그램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 공고문 참조

※ 단, 지자체별 특구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특구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

## □ 공통사항

- (신청자격)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역\* 내 또는 특구 지정 이후 실증을 위해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 \* 단, 규정상 특구 밖에 소재한 ① 비영리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및 ②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 또는 재정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기업도 특구사업자 참여 가능
- \*\* 단, 「지역특구법」 상 규제특례는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적용되므로, 특구사업자 지역 이전 등 세부 요건은 각 특구별 공고문 참고

◆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정의) 2.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이하 "특구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 제15호에 의거 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을 하는 자로서 비수도권 시·도지사 와 규제특례등을 적용받는다(관련 부품·기술·서비스의 개발 및 생산 등 특구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를 포함)로 특구계획에 포함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특화센터 등을 말한다. 단, 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구 밖의 기업은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한다.

제11조(정의) ②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구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특구예정지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특구 내로의 소재지 이전 확약서(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한한다)

- 대기업을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신청이 불가함

사전 제외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의 부도</li> <li>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li> <li>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li> <li>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li> <li>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li> <li>※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li> </ul> </li> <li>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li> <li>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li> <li>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li> <li>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li> </ol>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지자체별 사업공고문 참조

• 경상북도 :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누리집(www.gwangju.go.kr)
• 대전광역시 : 대전기업정보포털 누리집(www.dips.or.kr)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누리집(www.ulsan.go.kr)
• 전라남도 :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www.jeonbuk.go.kr)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자유특구 누리집(www.sandboxjeju.net)

□ **제출서류(공통사항)**

구 분	제출서류 목록
필 수	1.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및 (양식 2) 보안각서 ※ 신청기업별 해당 항목에 맞게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에 대한 선별과정 후, 추가 필수자료 요청 예정임 2. (양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5. (양식4)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6. (양식5)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해당시	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8.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9. 그 외 각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자료 등(지자체 공고문 참고)

**< 유의사항 >**

- 지자체별 사업 상세내용은 지자체별 공고문(“24.10.14일 이후)을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
- ※ 신청자격, 지원내용, 평가기준, 지원제외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1. 경북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 『경북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 참여 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에서 시행계획 중인 「경북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특구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024년 10월 14일  
경상북도지사

### 1 모집개요

- **(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기획 중인 “경북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발굴하여 특구사업의 성과 제고 및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사항 개정을 목적으로 함.
- ※ 규제자유특구 : 비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 규제 신속확인(법 제85조 제1항)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 확인”이라 한다)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실증특례 (법 제86조 제1항)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법 제90조 제1항)

①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특구개요)

- 특 구 명 : 경북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
- 지정기간 : 특구 지정일(2025년 상반기) ~ 2029. 12. 31.  
※ 추진 여건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실증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1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등급분류 실증	○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분류기준 및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실증
2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재제조 실증	○ 전기차 재제조 핵심부품 안전성 평가 및 실주행 모니터링 기술 실증
3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재사용 실증	○ 전기차 재사용 핵심부품 안전성 평가 및 운용 모니터링 기술 실증

○ (신청자격)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본 규제자유특구(후보특구)가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될 경우 특구사업이 수행될 지역(경상북도 포항시)으로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단, 대기업은 사업장의 이전 및 신설 의무 없음.
- 규제특례를 통해 본 특구와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 단, 다음의 사전지원 제외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 불가함

## 사전지원 제외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모집규모)** 10개사 내외
  - **(사업 내 역할)** 경상북도 및 연구지원기관과 규제자유특구 세부 실증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방안 기획(2025년 3월까지)
  - **(지원내용)** 본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선정된 특구사업자들은 아래와 같은 지원사항이 부여됨.
    - **(특례 부여)** 본 특구를 통해 부여될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에 관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허용
    - **(실증R&D 참여)** 규제개선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실증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사업화 지원)** 시제품 고도화, 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 지원내용은 기획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배점에 의거하여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들 중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70점 미만 기업 제외)

평가항목(배점)	
<b>(1) 기업 기본역량 (20점)</b>	
①	기업의 경력 및 업종 이해도 등 해당 분야 전문성(10점)
②	고용인력 / 기업신용등급(10점)
<b>(2) 혁신성, 사업성 및 안전성 (30점)</b>	
①	실증특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10점)
②	핵심기술의 독창성이나 차별성,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쟁력(10점)
③	생명·안전 및 환경 관련 문제의 적절한 대응방안(10점)
<b>(3) 성장가능성 (30점)</b>	
①	매출 및 영업이익 증대 가능성(10점)
②	실증기술의 향후 파급확산 가능성(10점)
③	후속 투자유치 및 사업 파트너 확보 가능성, 구체성(10점)
<b>(4) 정책지원 효과성 (20점)</b>	
①	국내 사업화를 위한 국내 수요처 및 네트워크 확보 여부, 산업 파급효과, 특구 연관성 등(10점)
②	고용 기대효과 및 신규 일자리창출 가능성(10점)
<b>종합평점(100점 만점)</b>	

※ 고용인력 : 30명 이상(5점) / 20명 이상(3점) / 10명 이상(1점) / 10명 이하(0점)

※ 기업신용등급 : AA 이상(5점) / A 이상(4점) / BBB 이상(3점) / BB 이상(2점) / BB 미만(0점)

## 2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전자메일 제출
- 접수기간 : 2024년 10월 28일(월)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 2024. 10. 31.(목), 18:00 이전 전자메일 수신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 및 문의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지역활성화기획센터  
- [jang9118@gbtp.or.kr](mailto:jang9118@gbtp.or.kr), 053-819-8183, 8180



### 3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공 통	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1부(양식1) 2. 보안각서 1부(양식2)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양식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신용등급 평가표 5.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6.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양식4) 7. 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양식5)
해 당 시	1. 지식재산권, 인증 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2.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안내책자 등

### 4 유의사항

- **(사업의 성격)** 공고일 현재, 「경북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25년 신규 규제자유 특구의 후보특구' 사업 중 하나로서, 향후 진행될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임('25년 상반기). 따라서, 본 후보특구의 특구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본 특구가 '25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지 못할 경우 특구사업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평가절차)** 안내한 제출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평가 일정 등은 별도 안내)

## 양식 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 경북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 특 구 사 업 참 여 의 향 서

본 사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북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 □ 기본 정보

<b>혁신사업명</b>	경북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		
<b>특구위치</b>	경상북도 포항시 일원		
<b>지정기간</b>	특구 지정일(2025년 상반기) ~ 2029. 12. 31.		
<b>실증사업</b>	<b>사업명</b>	<b>내용</b>	<b>신청희망</b> √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등급분류 실증	○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재제조· 재사용·재활용 등급분류기준 및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실증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재제조 실증	○ 전기차 재제조 핵심부품 안전성 평가 및 실주행 모니터링 기술 실증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재사용 실증	○ 전기차 재사용 핵심부품 안전성 평가 및 운용 모니터링 기술 실증	

### □ 확인 사항

본 사는 특구지정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사업장(지사, 연구소, 공장 등)을 특구 구역 내에 설치하고, 이후 실증사업 후속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일

기업(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보안각서

1. 본인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북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형태의 정보, 자료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경상북도와 명시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나 기관, 기업 관계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경상북도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일

소속기업(기관) :

대 표 자 :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경상북도의 「경북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관련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2025년 5월 31일까지

4. 동의거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표시)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10월 일

소속기업(기관) :

대 표 자 : (인)

## 양식 4 신청기업 현황자료

신청기업 현황자료						
특구사업자명						
일반현황	설립일			대표자		
	주소	( )		특구내 위치여부	O/X	
	사업자(법인)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합단체 <input type="checkbox"/> 비영리기관 <input type="checkbox"/> 개인				
	업종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자리) 활용 번호/분류명 기재				
주요생산품						
주요수행역할	<작성요령> ○ 회사 전체 사업내용이 아닌 특례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역할 요약 기재					
특허 및 보유기술	특허(출원)	00개	특허(등록)	00개	보유기술	00개
	<작성요령> ○ 특허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보유기술 및 특허, 기타 지식재산 등만 기재					
생산·연구시설, 보유 장비 등 현황	생산·연구 시설,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작성요령> ○ 상세 내용은 실증계획서에 작성하며 특례 및 사업관련 대표연계성 있는 것만 요약 기재					
시장 확보 역량	<작성요령> ○ 주요생산품, 보유기술의 시장 경쟁력 수준, 브랜드 인지도 등 기재 ○ 보유기술, 제품등의 해외 수출현황 등도 필요할 경우 기재					
재무상태 및 기업현황	구분(단위 : 억원, 명, %)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총자산	총자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비율*					
	상시 종업원 수					
	연구개발 투자액					
신용등급						
<작성요령> ○ 공식적으로 제출가능하거나 공증된 재무제표등을 활용하여 기재 * (자기자본이익률, RO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수행 중인 정부사업 현황	• 정부과제명(예산 : 억원, 소관부처명 : , 시작종료일 : 000000~111111, TRL : 00단계)					
기타	<작성요령> ○ 기타 알고 있거나 알려야 하는 사항 기재(ex. 특구사업자들과의 관계, 가족회사 여부 등)					

## 양식 5 실증사업 추진 계획서(7페이지 이내 작성)

### 1. 실증사업 추진 계획서

#### 가. 실증 개요

사업명	- 공고문에 안내된 3가지 사업 중 선택하여 기재(복수 가능)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품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실증 개요	- 공고문에 안내된 실증사업의 내용에 맞는 실증사업(안) 작성		

#### 나. 실증특례 신청사유 (실증특례 지원 필요성)

실증특례 신청사유의 구체적 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규	- (ex) 자전거법 제 20조 2의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15조 3항 - (ex) 도로교통법 제 19조

#### 다. 제품·서비스 시장 현황 및 특성

국내외 관련 시장동향	
제품(서비스) 특징 및 차별성	
제품(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유사 제품 (기업)현황	<input type="checkbox"/> 국내 및 국외에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외에 존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내에 존재 <input type="checkbox"/> 조사 해본 적 없음

#### 라. 제품·서비스 특례 추진에 따른 이용편의 및 기대효과

소비자(이용자) 편의	
기대효과	

## 2. 광주 첨단재생의료

# 『광주 생체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광주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14일

광주광역시장

### 1. 모집개요

- **(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광주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의 특구사업자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 규제자유특구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 신속확인(법 제8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실증특례 (법 제86조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법 제90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특 구 명 : 광주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 지정기간 : 2026.01.01 ~ 2029.12.31. 까지
- 주요 사업내용

No	사업명	내용
1	첨단재생의료 실증 R&D 및 실증 지원	○ 안전성이 검증된 중위험 치료(세포치료, 조직공학/융복합치료) 및 엑소좀 치료를 임상연구 없이 바로 치료 허용 ※사업 기간 내 실제적으로 실증 개시가 가능한 기업만 지원
2	첨단재생의료 실증센터 구축 및 운영	○ 실증센터 중심 유관기관 연계 산업생태계 조성(첨단재생의료 관련 공용활용 시설 및 장비 활용, 심화R&D 및 임상의 연계 임상연구 지원, 기업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국내·외 전시회 및 학회 참가 지원, 경제자유구역청 연계 투자유치 지원 등)

- **(모집대상)** 광주 생체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학, 기관, 병원
  - **(관련분야)** 첨단재생의료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화 등
  - **(신청자격)**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병원
    -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 제한
-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지원내용)**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 기업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실증R&D)** 규제특례 부여를 통한 실증R&D 및 실증 지원
  - **(사업화)**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지원
-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 2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 2024년 10월 14일(월) ~ 2024년 10월 31일, 18:00까지
- 제출처 :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 문의처 [cnuhbri@hanmail.net](mailto:cnuhbri@hanmail.net). ☎ 062-220-5715

## 3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필 수	1.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및 (양식 2)보안각서 ※ 신청기업별 해당 항목에 맞게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에 대한 선별과정 후, 추가 필수자료 요청 예정임. 2. (양식3)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5. (양식4)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6. (양식5)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해당시	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8.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 참여의향서 제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위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예정

## 4 유의사항

- **(평가절차)**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별도의 선정평가 절차가 있을 예정임  
 ※ 단, 광주광역시에서 선정한 특구사업자 및 혁신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과정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정기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음
- **(부가사항)** 특구사업자 최종 선정 시, 실증특례 수행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가 발생함

## 5 추진일정(안)

절차	추진 일정	주요 내용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	'24.10.14.~10.31.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공고·접수
특구사업자 선정위원회 및 선정 결과 통보 ↓	'24.11월 초	특구사업자 서면 평가 및 결과 통보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점검 ↓	'24.11~12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자문단 과제기획 점검
분과·심의·특구위원회 및 과제 최종 선정	'25.1.~4.	분과위원회 후 심의위 상정 과제 결정, 심의·특구위원회 최종 선정

\* 추진일정은 중앙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광주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요약	
배경 및 필요성	<p>본 사업은 첨단재생의료 실증을 통해 환자 치료권을 확대하여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제정 현황) 세계 주요국은 2016년 이전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제도화 노력을 기울인 반면, 한국은 2019년 비로소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됨</li> <li>- (재생의료 실시 현황) 일본, 대만 등에서는 다양한 첨단재생의료가 실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4년 2월 개정안 마련으로 '25년 2월부터 제한적 치료가 가능</li> <li>- (특례 필요성) 첨단재생의료는 선도국과 기술격차가 적은 첨단바이오 분야로 국내 연구진이 우수한 기술역량을 축적하고 있음. 본 사업은 국내 규제로 인해 해외 원정 시술을 떠나는 환자들의 국내 시술을 가능케 하여 환자치료권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li> </ul>
목적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실증 및 생태계조성 지원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R&D 및 치료역량을 구축하고 광주시 주력산업인 생체의료 산업의 활로를 개척
위치 · 면적	광주광역시 동구 대학병원 밀집지역, 서구 병원 밀집지역, 남구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 등 3km <sup>2</sup>
사업기간	2026.01 ~ 2029.12.(4년)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 전남대학교병원</li> <li>- (병원) 모집 예정</li> <li>- (기업) 모집 예정</li> </ul>
사업비	- 추후 결정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심의위원회 및 안전관리조직 구축 및 운영) 국내 재생의료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1개 존재하나 일본은 다수가 존재하고 현재 법규에는 단일한 안전관리기관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규정만 존재함 → 신속하고 정확한 재생의료연구 심사 및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 내 조직 구축 및 운영</li> <li>- (첨단재생의료 실증 R&amp;D 및 실증 지원) 일본/대만 등 국외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치료(자가면역세포치료, 자가줄기세포치료, 엑소좀치료 등)이 국내에서는 중위험으로 분류되거나 규정이 없어 치료에 바로 사용할 수 없음 → 안전성이 검증된 중위험 치료 및 엑소좀 치료를 임상연구 없이 바로 치료 허용</li> <li>- (첨단재생의료 실증센터 구축 및 운영) 전남대학교병원 내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총괄지원시스템 구축, 첨단재생의료 관련 공용활용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지원, AI연계 첨단재생의료산업 생태계구축 지원(첨단재생의료 관련 공용활용 시설 및 장비 활용, 심화R&amp;D 및 임상의 연계 임상연구 지원, 기업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국내·외 전시회 및 학회 참가 지원, 경제자유구역청 연계 투자유치 지원 등)</li> </ul>
규제특례조문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9조·제2조

## 양식 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 광주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참여의향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생체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에 특구사업자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실증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 기본 정보

특 구 명	광주 생체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특구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대학병원 밀집지역, 서구 병원 밀집지역, 남구 빗고을전남대학교병원,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 등 3km <sup>2</sup>	
사업기간	특구사업자 선정시부터 ~ 2029. 12. 31.까지	
세부 사업	사 업 내 용	신청희망 √
	(첨단재생의료 실증 R&D 및 실증 지원) 안전성이 검증된 중위험 치료 및 엑소좀 치료를 임상연구 없이 바로 치료 허용 ※ 사업 기간 내 실제적으로 실증 개시가 가능한 기업만 지원	
	1. 세포치료 실증 R&D 및 실증 지원	
	2. 조직공학/융복합치료 실증 R&D 및 실증 지원	
	3. 엑소좀치료 실증 R&D 및 실증 지원	
	(첨단재생의료 실증센터 구축 및 운영) 유관기관 연계 산업생태계 조성	
	1. 첨단재생의료 관련 공용활용 시설 및 장비 활용	
	2. AI연계 첨단재생의료 데이터 활용 연구	
	3. 심화R&D 및 임상의 연계 임상연구 지원	
	4. 기업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5. 국내·외 전시회 및 학회 참가 지원		
6. 경제자유구역청 연계 투자유치 지원		

#### □ 확인 사항

특구지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사업장(연구소, 사무소, 공장 등)을 특구 안에 설치하고, 이후 실증사업 후속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 보안각서

1. 본인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형태의 정보, 자료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광주광역시와 명시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나 기관, 기업 관계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소 속 기 관 :

성 명 :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광주광역시의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2025년 7월 31일까지
4. 동의거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표시)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 . .

소속기관 :

대표자 : (인)

## 양식 4 신청기업 현황자료

신청기업 현황자료						
특구사업자명						
일반현황	설립일			대표자		
	주소	(☎ )		특구내 위치여부	O/X	
	사업재(법인)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협단체 <input type="checkbox"/> 비영리기관 <input type="checkbox"/> 개인				
	업종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자리) 활용 번호/분류명 기재				
주요생산품						
주요 수행 역할	■ <작성요령> ○ 회사 전체 사업내용이 아닌 특례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역할 요약 기재					
특허 및 보유기술	특허(출원)	00개	특허(등록)	00개	보유기술	00개
	■ (특허, 보유기술) <작성요령> ○ 특례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보유기술 및 특허, 기타 지식재산 등만 기재					
생산·연구시설, 보유 장비 등 현황	생산·연구 시설,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작성요령> ○ 상세 내용은 실증계획서에 작성하며 특례 및 사업관련 대표연계성 있는 것만 요약 기재					
시장 확보 역량	■ <작성요령> ○ 주요생산품, 보유기술의 시장 경쟁력 수준, 브랜드 인지도 등 기재 ○ 보유기술, 제품등의 해외 수출현황 등도 필요할 경우 기재					
재무상태 및 기업현황	구분(단위 : 억원, 명, %)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총자산	총자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비율*					
	상시 종업원 수					
	연구개발 투자액					
	신용등급					
<작성요령> ○ 공식적으로 제출가능하거나 공증된 재무제표등을 활용하여 기재 * (자기자본이익률, RO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수행중인 정부사업 현황	■ 정부과제명(예산 : 억원, 소관부처명 : , 시작종료일 : 000000~111111, TRL : 00단계)					
기타	■ <작성요령> ○ 기타 알고 있거나 알려야 하는 사항 기재(ex. 특구사업자들과의 관계, 가족회사 여부 등)					



## 양식 5 실증사업 추진 계획서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제안한 제품·서비스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어 중심으로 기술
  - 실증특례 신청사유에 대하여 사업추진 저해 규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관련 시장규모와 성장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유사 제품/서비스 사례에 대하여 기술
  - 본 제품·서비스 추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기술
  - 비영리 기관의 경우 해당 사업 성격에 맞게 기술
- ※ 1. 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는 휴면명조, 줄간격 160으로 3페이지 내외로 기술할 것

## 규제자유특구 신규참여 신청서

### 1. 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 가. 제품·서비스 개요

명칭	유형	<input type="checkbox"/> 제품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제품(서비스) 개요	※ 제품·서비스의 용도 및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표현(2~3줄 작성) ※ 제품(서비스) 사진 또는 이미지 삽입	

#### 나. 실증특례 신청사유 (실증특례 지원 필요성)

실증특례 신청사유의 구체적 내용	<input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신청계획서 내 신청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술
관련법규	- 자전거법 제 20조 2의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15조 3항 - 도로교통법 제 19조

#### 다. 제품·서비스 시장 현황 및 특성

국내외 관련 시장동향	※ 관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하여 기술 ※ 국내·외 관련 제품(서비스)의 개발 현황 및 유사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사의 현황, 예상되는 시장의 규모 및 수요에 대해 기술
-------------	--

<b>제품(서비스) 특징 및 차별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특징(차별화된 요소 등) 및 용도에 대해 기술</li> <li>※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특성 및 지표 등에 대해 기술</li> <li>※ 기존 제품(또는 경쟁제품)과 비교해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내용(가격대비 품질, 성능, 서비스, 혜택)을 중심으로 기술(사진, 이미지, 도표 등 포함)</li> </ul>
<b>제품(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b>	<p> <input type="checkbox"/> 특허등록( )건   <input type="checkbox"/> 특허출원( )건   <input type="checkbox"/> 실용신안( )건   <input type="checkbox"/> 의장 ( )건   <input type="checkbox"/> 상표( )건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건   <input type="checkbox"/> GS ( )건   <input type="checkbox"/> 인증( )건   <input type="checkbox"/> NET ( )건   <input type="checkbox"/> NEP( )건 </p> <p><b>명칭</b></p> <p>-</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사항은 해당 항목과 관련된 최근 5년 이내 보유현황을 작성</li> <li>※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li> </ul>
<b>유사 제품 (기업)현황</b>	<p> <input type="checkbox"/> 국내 및 국외에 없음   <input type="checkbox"/> 국외에 존재   <input type="checkbox"/> 국내에 존재   <input type="checkbox"/> 조사 해본 적 없음  (기업 또는 제품명 : ) </p>

**라. 제품·서비스 특례 추진에 따른 이용편익 및 기대효과**

<b>소비자(이용자) 편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뛰어난 편익 등을 기술</li> <li>※ 소비자는 사회적(공공)측면, 기관, 개인 등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음</li> <li>※ 소비자들로 하여금 본 제품·서비스의 수용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기술</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서비스의 공급을 통하여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성 목표 등 기대효과에 대하여 기술</li> <li>※ 해당시장이나 연관시장(산업)의 시장규모 변화 및 기대되는 신시장(사업) 규모 등 기술</li> </ul>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첨단재생의료 실증 R&D 및 실증 사업에 지원 예정인 기업, 대학, 기관만 작성
  - 실증 종료시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서비스, 제품 등) 및 그와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평가방법 및 실증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실증특례를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 또는 서비스/제품의 성능개선 여부 등 작성
- ※ 2. 실증특례 시행 계획서는 휴먼명조, 줄간격 160으로 최대 3페이지 분량으로 기술할 것

## 2. 실증특례 시행 계획서

실증특례명			
실증 구역		지정 기간	

### 가. 목적 및 대상

실증특례 목적	※ 실증을 하려는 산업 또는 관련 분야의 개선 필요사항, 실증사업 수행을 통한 해결 방향 등에 대해 작성
실증 대상	※ 실증 대상 기술의 완성도(보유기술 및 제품 등 준비 현황)를 포함하여 작성 ※ 실증사업에 포함되는 주요기술 단위별 작성

### 나. 시험·실증 방법

실증 항목 및 내용	
시험·실증 항목 및 방법	※ 시험/검증의 방법을 일련의 시나리오 형태로 기술 ※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후 최종목표 달성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량화 혹은 정성화된 목표치 기술
세부 일정	※ 검증을 위한 준비내용 및 일정
실증결과 보고계획	
실시체계	※ 실증사업 실시체계 및 실증운영/관리 방안 등 ※ 관련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와의 조정상황 등

### 3. 대전 우주항공

## 『대전광역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사업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기업, 기관, 대학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14일  
대전광역시장

### 1. 모집개요

- **(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대전광역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가 후보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후보군)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 규제자유특구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 신속확인(법 제8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 확인”이라 한다)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실증특례 (법 제86조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법 제90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대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개요

- (특 구 명) 대전광역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 (지정기간) 최종 특구사업자 선정 시부터 4년간
  - ※ 법제화 진행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 (주요 사업내용)

No	사업명	내용
1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AI 모델 활용 실증	○ 민간기업이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구축하고 데이터안심구역안에서 AI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서비스 개발 실증
2	우주항공 부품 기준 정립 실증	○ 우주항공 부품에 대한 별도 기준 정립 및 인증시험 실증 -(실증대상) 발사체 및 탑재체(위성), 지상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탱크류, 용기류, 배관류, 밸브류 등 비행용 부품 중 운용 압력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상(초저온 가스 2bar, 상온가스 10bar)이 되는 부품

□ (신청자격)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전이 특구 선정시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기관, 대학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지원내용)**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지원
-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4.10.14.(월) ~ 10.31.(목)
- 접수기간 : 2024.10.14.(월) 09:00 ~ 10.31.(목) 18:00까지

### □ 접수처

- 온라인 접수처 : 대전기업정보포털(DIPS, www.dips.or.kr)

### □ 신청방법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접수 (과제접수) 해당란 입력		문서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확인 및 완료

#### ① 1단계 :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대전기업정보포털(DIPS)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 ② 2단계 : 온라인 접수(과제접수) 해당란 입력

- 과제 신청 시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대전기업정보포털(DIPS)을 통해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내용은 온라인에서 자동파일 생성

####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아래의 제출서류를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대전기업정보포털(DIPS)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30MB임을 유의**

####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확인용으로 보관 필수(향후 필요시 제출 필요)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한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수정 전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 후 새 접수증이 없을 경우 접수 취소)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필 수	1.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2. (양식2) 보안각서 2. (양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5. (양식4)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6. (양식5) 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해당시	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8.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3. 선정평가

□ (평가방법) 서면 또는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평가내용)		배점
필요성 (30)	○ 규제사항 해당여부	○ 실증대상의 관련 규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15
	○ 실증특례의 필요성	○ 실증특례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15
사업추진 체계 (25)	○ 사업추진 역량	○ 실증특례 추진을 위한 특구사업자의 보유 역량과 참여의지	13
	○ 실행가능성	○ 추진체계 및 추진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12
계획의 적정성 (25)	○ 목표의 명확성	○ 사업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12
	○ 추진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를 위한 추진전략, 추진내용, 추진일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13
기대효과 (20)	○ 사업화	○ 수혜기업의 성장 가능성	10
	○ 파급효과	○ 산업 및 지역으로 기여도	10

※ 세부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추진일정

절차	추진 일정	주요 내용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4.10.14.~10.31.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공고·접수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24.11.01~11.08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현장점검
특구사업자 선정위원회 및 선정 결과 통보 ↓	'24.11.11~11.15	특구사업자 서면 평가 및 결과 통보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점검 ↓	'24.11.15~12.31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자문단 과제기획 점검
분과·심의·특구위원회 및 과제 최종 선정	'25.1.~4.	분과위원회 후 심의위 상정 과제 결정, 심의·특구위원회 최종 선정

\* 추진일정은 중앙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유의사항

- 대전광역시에서 선정한 특구사업자 및 혁신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과정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정기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음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 특구사업자 최종 선정 시, 실증특례 수행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가 발생함

## 6.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내용	연락처
대전테크노파크	우주·ICT산업센터 김규리 책임	신청·접수, 추진일정, 신청서류 작성, 기타 문의사항 등	(042-930-4324)
	운영지원실 박유강 책임	온라인 접수 오류	(042-930-4824)

## 양식 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 대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참여의향서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에 특구 사업자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실증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 기본 정보

혁신사업명	대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세부사업	사업명	내용	신청희망 ✓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AI 모델 활용 실증	○ 민간기업이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구축하고 데이터안심구역안에서 AI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서비스 개발 실증	
우주항공 부품 기준 정립 실증	○ 우주항공 부품에 대한 별도 기준 정립 및 인증시험 실증 -(실증대상) 발사체 및 탑재체(위성), 지상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탱크류, 용기류, 배관류, 밸브류 등 비행용 부품 중 운용 압력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상(초저온가스 2bar, 상온가스 10bar) 이 되는 부품		

#### □ 확인 사항

특구지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사업장(연구소, 사무소, 공장 등)을 특구 안에 설치하고, 이후 실증사업 후속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회사명(기관·학교)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보안각서

1. 본인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형태의 정보, 자료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대전광역시와 명시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나 기관, 기업 관계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회사명(기관·학교) :

대표자 :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대전광역시의 「대전광역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2029년 12월 31일까지

4. 동의거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표시)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4. . .

회사명(기관·학교) :

대 표 자 : (인)

# 양식 4 신청기업 현황자료

신청기업 현황자료						
특구사업자명						
일반현황	설립일		대표자			
	주소	(☎ )	특구내 위치여부	O/X		
	사업자(법인)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합단체 <input type="checkbox"/> 비영리기관 <input type="checkbox"/> 개인				
	업종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자리) 활용 번호/분류명 기재				
주요생산품						
주요 수행 역할	<작성요령> ○ 회사 전체 사업내용이 아닌 특례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역할 요약 기재					
특허 및 보유기술	특허(출원)	00개	특허(등록)	00개	보유기술	00개
	<작성요령> ○ 특허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보유기술 및 특허, 기타 지식재산 등만 기재					
생산·연구시설, 보유 장비 등 현황	생산·연구 시설,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작성요령> ○ 상세 내용은 실증계획서에 작성하며 특례 및 사업관련 대표연계성 있는 것만 요약 기재					
시장 확보 역량	<작성요령> ○ 주요생산품, 보유기술의 시장 경쟁력 수준, 브랜드 인지도 등 기재 ○ 보유기술, 제품등의 해외 수출현황 등도 필요할 경우 기재					
재무상태 및 기업현황	구분(단위 : 억원, 명, %)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총자산	총자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비율*					
	상시 종업원 수					
	연구개발 투자액					
	신용등급					
<작성요령> ○ 공식적으로 제출가능하거나 공증된 재무제표등을 활용하여 기재 * (자기자본이익률, RO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수행중인 정부사업 현황	• 정부과제명(예산 : 억원, 소관부처명 : , 시작종료일 : 000000~111111, TRL : 00단계)					
기타	<작성요령> ○ 기타 알고 있거나 알려야 하는 사항 기재(ex. 특구사업자들과의 관계, 가족회사 여부 등)					

# 양식 5 실증사업 추진 계획서

## 1. 실증특례 시행 계획서

실증특례명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AI 모델 활용 실증 or 우주항공 부품 기준 정립 실증 중 택1
-------	---

### 가. 실증 목적 및 대상

실증특례 목적	
실증대상	

### 나. 시험·검증 방법

실증항목 및 내용																																																																																																																																															
시험·검증 항목 및 방법																																																																																																																																															
세부 일정	○ 실증기간 : 2025년도부터 ____개년(최대 4년) ○ 실증세부일정 ※ 실증기간 동안 수행할 내용에 대한 일정계획 작성(하기표 활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요약</th> <th rowspan="2">추진내용 및 범위</th> <th colspan="4">2025</th> <th colspan="4">2026</th> <th colspan="4">2027</th> <th colspan="4">2028</th> </tr> <tr> <th>1</th><th>2</th><th>3</th><th>4</th> <th>1</th><th>2</th><th>3</th><th>4</th> <th>5</th><th>6</th><th>7</th><th>8</th> <th>9</th><th>10</th><th>11</th><th>12</th> </tr> </thead> <tbody> <tr> <td>실증준비</td> <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r> <tr> <td>안전확인</td> <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r> <tr> <td>성능평가</td> <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r> <tr> <td>분석</td> <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r> <tr> <td>개선</td> <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r> <tr> <td>결과보고</td> <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2025				2026				2027				2028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2025				2026				2027				2028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실증결과 보고계획	※ 어떠한 형태로 실증결과물 나오게 되는지와, 향후 실증결과물을 어떻게 활용(사업화)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																																																																																																																																														
추진체계	※ 실증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계 작성(도식화하여 제시)																																																																																																																																														

## 2. 실증대상(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 가. 제품·서비스 개요

명칭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품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제품(서비스) 개요			

### 나. 실증특례 신청사유 (실증특례 지원 필요성)

실증특례 신청사유의 구체적 내용	<input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실증특례 신청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용 작성	
	관련법규	- (예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별표1] - (예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법규상의 규제사항 기재		

### 다. 제품·서비스 시장 현황 및 특성

국내외 관련 시장동향	
제품(서비스) 특징 및 차별성	
제품(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유사 제품 (기업)현황	<input type="checkbox"/> 국내 및 국외에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외에 존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내에 존재 <input type="checkbox"/> 조사 해본 적 없음

### 라. 제품·서비스 특례 추진에 따른 이용편의 및 기대효과

소비자(이용자) 편의	
기대효과	

## 4.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특구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장

### - 주의 사항 -

-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사업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1.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지정 여부에 따라 본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됨(2025년 4월 발표 예정)
- 2.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의 검토를 거쳐 결정됨
- 3. 신청자격 및 증빙 서류 등 제출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 1 모집개요

- **(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가 후보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특구사업자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규제자유특구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 신속확인(법 제8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 (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법 제86조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법 제90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특 구 명 :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 지정기간 : 최종 특구사업자 선정 시부터 4년간

※ 법제화 진행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 주요 사업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중대형 선박용 Truck to Ship 벙커링 안전기술개발 및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상에서 TTS 방식을 활용해 해상의 선박에 암모니아를 충전하는 실증특례 요청</li> <li>○ 매니폴드를 활용해 다수의 탱크로리 동시 충전·하역하는 TTS 방식 운영 실증특례 요청</li> <li>○ 육상 TTS 방식의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실증특례 요청</li> </ul>
2	중대형 선박용 Ship To Ship 벙커링 안전기술개발 및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에서 STS 방식을 활용해 선박 간 암모니아 충전 및 하역하는 실증특례 허용</li> <li>○ 해상 STS 방식의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실증특례 요청</li> </ul>

- **(모집대상)**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 **(관련분야)** 중대형 선박용 암모니아 벙커링 기술개발 및 실증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 **(신청자격)**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 대기업을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지원내용)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지원
-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 2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 2024년 10월 14일(월) ~ 10월 31일(목), 18:00까지
- 제출처 및 문의처 :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
  - 안수진 주임연구원, sujin5052@utp.or.kr, 052-219-8755

## 3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필 수	1.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및 (양식 2)보안각서 ※ 신청기업별 해당 항목에 맞게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에 대한 선별과정 후, 추가 필수자료 요청 예정임. 2. (양식3)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5. (양식4)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6. (양식5)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해당시	7. 최근 5년 간 특화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 서류 -단, 사업의 시행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8.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9.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 참여의향서 제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위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예정

#### 4 유의사항

- **(평가절차)**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별도의 선정평가 절차가 있을 예정임 (평가 일정·방법 등은 별도 안내)
  - ※ 단, 울산광역시에서 선정한 특구사업자 및 혁신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과정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정기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음
- **(부가사항)** 특구사업자 최종 선정 시, 실증특례 수행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가 발생함

#### 5 추진일정(안)

절차	추진 일정	주요 내용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24.10.14(월).~10.31(목).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공고·접수
↓		
특구사업자 모집 설명회	'24.10.17(목), 예정	규제자유특구 소개,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사업 및 제출서류 작성 안내
↓		
특구사업자 선정위원회 및 선정 결과 통보	'24.11월 초	특구사업자 서면 평가 및 결과 통보
↓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점검	'24.11~12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자문단 과제기획 점검
↓		
분과·심의·특구위원회 및 과제 최종 선정	'25.1.~4.	분과위원회 후 심의위 상정 과제 결정, 심의·특구위원회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양식 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참여의향서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에 특구 사업자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실증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 기본 정보

<b>혁신사업명</b>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b>특 구 위 치</b>	울산광역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및 울산항 일원)		
<b>지 정 기 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구사업자 선정 시부터 4년</li> </ul>		
<b>세부사업</b>	<b>사 업 명</b>	<b>내 용</b>	<b>신청 희망</b> √
	중대형 선박용 Truck to Ship 벙커링 안전기술개발 및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상에서 TTS 방식을 활용해 해상의 선박에 암모니아를 충전하는 실증 특례 요청</li> <li>매니폴드를 활용해 다수의 탱크로리 동시 충전·하역하는 TTS 방식 운영 실증특례 요청</li> <li>육상 TTS 방식의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실증 특례 요청</li> </ul>	
	중대형 선박용 Ship To Ship 벙커링 안전기술개발 및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상에서 STS 방식을 활용해 선박 간 암모니아 충전 및 하역하는 실증 특례 허용</li> <li>해상 STS 방식의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실증 특례 요청</li> </ul>	

\* 특구의 위치·면적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확인 사항

특구지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사업장(연구소, 사무소, 공장 등)을 특구 안에 설치하고, 이후 실증사업 후속 상용화를 위한 추가 투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보안각서

1. 본인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형태의 정보, 자료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울산광역시와 명시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나 기관, 기업 관계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울산광역시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소 속 기 관(업) :

성 명 :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울산광역시의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2029년 12월 31일까지

4. 동의거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표시)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 . .

소속기관(업) :

대 표 자 : (인)

## 양식 4 신청기업 현황자료

신청기업 현황자료						
특구사업자명						
일반현황	설립일		대표자			
	주소	(☎ )	특구내 위치여부	O/X		
	사업자(법인)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협단체 <input type="checkbox"/> 비영리기관 <input type="checkbox"/> 개인				
	업종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자리) 활용 번호/분류명 기재				
주요생산품						
주요 수행 역할	• <작성요령> ○ 회사 전체 사업내용이 아닌 특례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역할 요약 기재					
특허 및 보유기술	특허(출원)	00개	특허(등록)	00개	보유기술	00개
	• (특허, 보유기술) <작성요령> ○ 특례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보유기술 및 특허, 기타 지식재산 등만 기재					
생산·연구시설, 보유 장비 등 현황	생산·연구 시설,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작성요령> ○ 상세 내용은 실증계획서에 작성하며 특례 및 사업관련 대표연계성 있는 것만 요약 기재					
시장 확보 역량	• <작성요령> ○ 주요생산품, 보유기술의 시장 경쟁력 수준, 브랜드 인지도 등 기재 ○ 보유기술, 제품등의 해외 수출현황 등도 필요할 경우 기재					
재무상태 및 기업현황	구분(단위 : 억원, 명, %)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총자산	총자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비율*					
	상시 종업원 수					
	연구개발 투자액					
	신용등급					
<작성요령> ○ 공식적으로 제출가능하거나 공증된 재무제표등을 활용하여 기재 * (자기자본이익률, RO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수행중인 정부사업 현황	• 정부과제명(예산 : 억원, 소관부처명 : , 시작종료일 : 000000~111111, TRL : 00단계)					
기타	• <작성요령> ○ 기타 알고 있거나 알려야 하는 사항 기재(ex. 특구사업자들과의 관계, 가족회사 여부 등)					



## 양식 5 실증사업 추진 계획서

### 1. 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 가. 제품·서비스 개요

명칭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품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제품(서비스) 개요			

#### 나. 실증특례 신청사유 (실증특례 지원 필요성)

실증특례 신청사유의 구체적 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규	- (예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예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 다. 제품·서비스 시장 현황 및 특성

국내외 관련 시장동향	
제품(서비스) 특징 및 차별성	
제품(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유사 제품 (기업)현황	<input type="checkbox"/> 국내 및 국외에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외에 존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내에 존재 <input type="checkbox"/> 조사 해본 적 없음

#### 라. 제품·서비스 특례 추진에 따른 이용편의 및 기대효과

소비자(이용자) 편의	
기대효과	

## 2. 실증특례 시행 계획서

실증특례명			
실증 구역		지정 기간	

### 가. 실증 목적 및 대상

실증특례 목적	
실증 대상	

### 나. 시험·검증 방법

실증 항목 및 내용																	
시험·검증 항목 및 방법																	
세부 일정	○ 실증일정 - 2025년 실증일정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2026년 실증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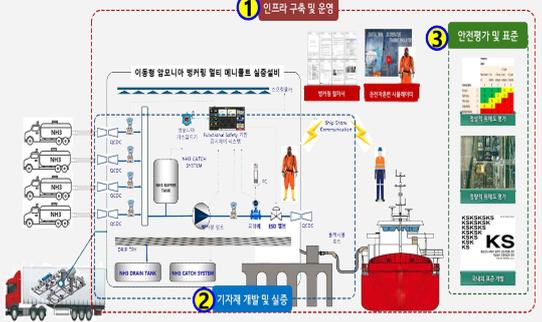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실증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실증결과 보고계획													
실시체계													

## 참고 1 암모니아 병커링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현황

세부사업명	실증특례 부여(안)
<p>중대형 선박용 Truck to Ship 병커링 안전기술개발 및 실증</p>	<p>▶ 현행 법령상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기준만 있고 암모니아를 선박으로 충전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기준은 부재</p> <p>☞ 암모니아를 선박으로 충전하려는 자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허용</p>
	<p>▶ 현행 법령상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 운반, 저장, 사용에 관한 기준만 있고 탱크로리를 통해 암모니아를 충전하는 기준은 부재</p> <p>☞ 암모니아 탱크로리를 통해 암모니아를 선박에 충전하는 기준 허용</p>
	<p>▶ 현행 법령상 암모니아 연료추진시스템 기자재 및 선박 관련 기준 부재</p> <p>☞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선박 강선의 구조기준, 건조검사 및 형식승인, 검정 등 허용</p>
	<p>▶ 현행 법령상 암모니아 취급시 유해·위험물질로서 의무이행사항 준수에 따른 중복규제</p> <p>☞ 인허가 의제 규정의 신설을 통한 허용</p>
	<p>▶ 현행 법령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의무이행사항 준수에 따른 중복규제</p> <p>☞ 인허가 의제 규정의 신설을 통한 허용</p>
<p>중대형 선박용 Ship to Ship 병커링 안전기술개발 및 실증</p>	<p>▶ 현행 법령상 암모니아 연료추진시스템 기자재 및 선박 관련 기준 부재</p> <p>☞ 암모니아 연료추진시스템 기자재 및 선박의 건조 및 운항 관련 기준 허용</p>
	<p>▶ 현행 법령상 무역항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 관련 기준 부재</p> <p>☞ 선박 → 선박 암모니아 공급(병커링)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허용</p>
	<p>▶ 현행 법령상 암모니아 연료공급업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및 기술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등록 수리 기준 부재</p> <p>☞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허용</p>

※ 규제특례 현황은 소관 부처 및 관련 허가 처리 과정에서 실증특례 내용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참고 2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개요

<b>목적</b>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울산지역 주력산업인 조선 및 화학산업 인프라 활용성을 확대함으로써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조선산업 벨류체인 구축 및 산업 생태계 조성	
<b>개요</b>	□ 지정기간 : 2025. 6. ~ 2029. 5. □ 위치·면적 : 울산광역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및 울산항 일원) (6.93km <sup>2</sup> )	
<b>【 2개 사업 / 실증특례 5개 】</b>		
<b>사업</b>	<p>① <b>중대형 선박용 Truck To Ship 벙커링 안전기술개발 및 실증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TS 활용 이동식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li> <li>- 탱크로리 동시 벙커링 실증</li> <li>- TTS 안전성 평가 및 표준 개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TTS 암모니아 벙커링 시스템 ]</p>	<p>② <b>중대형 선박용 Ship To Ship 벙커링 안전기술개발 및 실증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의 STS 암모니아 벙커링 관련 기자재 개발 및 실증</li> <li>- STS 안전성 평가 및 표준 개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STS 암모니아 벙커링 시스템 ]</p>
<b>주요 규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모니아를 선박으로 충전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기준 부재</li> <li>· 탱크로리를 통해 암모니아를 충전하는 기준 부재</li> <li>· 암모니아 연료추진시스템 기자재 및 선박 관련 기준 부재</li> <li>· 암모니아 취급시 유해·위험물질로서 의무이행사항 준수에 따른 중복규제</li> <l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의무이행사항 준수에 따른 중복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모니아 연료추진시스템 기자재 및 선박 관련 기준 부재</li> <li>· 무역항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관리청의 승인 기준 부재</li> <li>· 암모니아 연료공급업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및 기술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등록 수리 기준 부재</li> </ul>
<b>실증 특례</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육상에서 TTS를 활용해 해상의 선박에 암모니아 충전하는 실증특례 허용</li> <li>② 매드폴드를 활용해 다수의 탱크로리 동시 충전·하역하는 TTS 운영 실증특례 허용</li> <li>③ 육상 TTS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실증특례 허용</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상에서 Ship To Ship 벙커링 방식으로 선박간 암모니아 충전 및 하역 실증특례 허용</li> <li>② 해상 STS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실증특례 허용</li> </ol>

## 5. 전남 소형 e-모빌리티

#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참여 희망 특구 사업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특구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10. 14.

## 전라남도지사

### 1. 모집개요

- (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후보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후보군)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규제자유특구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구분	주요 내용
신속확인 (법 제86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실증특례 (법 제86조 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구 분	주 요 내 용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후보특구) 지자체가 제안한 우수한 특구계획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기획 및 부처협의 등을 지원함. 최종 특구 지정은 분과위, 심의위, 특구위 심의 및 평가를 거쳐 2025년 4월 발표 예정

- 특 구 명 :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 사업기간 : 2025년 ~ 2029년

- 특구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 / 면적 474.7km<sup>2</sup>

- 사업내용 : 소형 e-모빌리티 규제해소 실증지원 및 기업 수출지원

※ 분과별 규제해소 및 실증지원 → 상품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내수, 수출 증대로 산업활성화

사업명	실증내용	
전기이륜차	4륜형 전기이륜차 2인승 간이형 차실(앞 유리, 캐노피, 바람막이, 프레임 등), 안전장치(안전벨트), 교환형배터리 적용한 차량 안정성 실험 후 교차로, 일반도로(60km/h 이하)에서 시거 및 주행행태 실증	
초소형전기차	20kW모터 적용, 배터리 용량 증설, 설계하중 및 프레임 견인고리 기술검토 및 T-Car 제작/인증 후 경사로 구간 및 시내 구간에서의 주행 및 피견인 성능 실증	
PM	전기자전거	Throttle과 PAS 전기자전거(속도제한 해지방지 기술, 공유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 2인 이상 탑승 방지 기술 등) 제작 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에서의 단계별 최고속도를 설정한 주행 실증
	고령친화이동기기	고령친화 이동기기(속도제어, 긴급제동, 배터리 교환, 차실 / 도어, 안전센서, 배터리 교환식 등)의 안전장치 개발 적용을 통한 최고주행속도 25km/h 이하에서의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도로 주행 실증

##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1년 이내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 ※ 전라남도 및 영광군 내 본사 또는 공장 운영 기업 평가시 우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기업부의 공통운영 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 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3. 지원내용

- 전라남도 제안하는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중앙정부 최종 선정평가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지원
-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 기업
-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 4.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4년 10월 14일(월)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4년 10월 24일(목)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 신청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제출 후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 제출처 및 문의처
  -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chukn@korea.kr / ☎ 061-286-3941)
  - 전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dhchoi@jntp.or.kr / ☎ 061-729-2713)
  -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수신)에 한함

#### 5.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필 수	1.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및 (양식 2)보안각서 ※ 신청기업별 해당 항목에 맞게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에 대한 선별과정 후, 추가 필수자료 요청 예정임 2. (양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5. (양식4)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6. (양식5) 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해당시	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8.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 참여의향서 제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위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예정

## 6. 유의사항

- (평가절차)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전라남도 차원에서 별도의 선정평가 절차가 있을 예정임(평가 일정·방법 등은 별도 안내)
  - ※ 단,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특구사업자 및 혁신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과정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정기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음
- (부가사항) 특구사업자 최종 선정 시, 실증특례 수행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가 발생함

## 양식 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참여의향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에 특구 사업자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실증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 기본정보

특구명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특구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총 474.7 km <sup>2</sup> )		
지정기간	2025. 8 ~ 2029. 7.(최대 4년) 예정		
세부사업	구분	내 용	신청희망 사업 해당란 √
	전기 이륜차	○ 4륜형 전기이륜차 2인승 간이형 차실(앞 유리, 캐노피, 바람막이, 프레임 등), 안전장치(안전벨트), 교환형배터리 적용한 차량 안정성 실험 후 교차로, 일반도로(60km/h 이하)에서 시거 및 주행행태 실증	( )
	초소형 전기차	○ 20kW모터 적용, 배터리 용량 증설, 설계하중 및 프레임 견인고리 기술검토 및 T-Car 제작/인증 후 경사로 구간 및 시내 구간에서의 주행 및 피견인 성능 실증	( )
	전기 자전거	○ Throttle과 PAS 전기자전거(속도제한 해지방지 기술, 공유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 2인 이상 탑승 방지 기술 등) 제작 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에서의 단계별 최고속도를 설정한 주행 실증	( )
고령친화 이동기기	○ 고령친화 이동기기(속도제어, 긴급제동, 배터리 교환, 차실/도어, 안전센서, 배터리 교환식 등)의 안전장치 개발 적용을 통한 최고주행속도 25km/h 이하에서의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도로 주행 실증	( )	

#### □ 확인 사항

특구지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사업장(연구소, 사무소, 공장 등)을 특구 안에 설치하고, 이후 실증사업 후속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보안각서

1. 본인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형태의 정보, 자료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전라남도와 명시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나 기관, 기업 관계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전라남도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소 속 기 관 :

성 명 :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전라남도의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2029년 12월 31일까지

4. 동의거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표시)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 . .

소속기관 :

대표자 : (인)

## 양식 4 신청기업 현황자료

신청기업 현황자료						
특구사업자명						
일반현황	설립일			대표자		
	주소	( )		특구내 위치여부	O/X	
	사업자(법인)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협단체 <input type="checkbox"/> 비영리기관 <input type="checkbox"/> 개인				
	업종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자리) 활용 번호/분류명 기재				
주요생산품						
주요 수행 역할	• <작성요령> ○ 회사 전체 사업내용이 아닌 특례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역할 요약 기재					
특허 및 보유기술	특허(출원)	00개	특허(등록)	00개	보유기술	00개
	• (특허, 보유기술) <작성요령> ○ 특례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보유기술 및 특허, 기타 지식재산 등만 기재					
생산·연구시설, 보유 장비 등 현황	생산·연구 시설,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작성요령> ○ 상세 내용은 실증계획서에 작성하며 특례 및 사업관련 대표연계성 있는 것만 요약 기재					
시장 확보 역량	• <작성요령> ○ 주요생산품, 보유기술의 시장 경쟁력 수준, 브랜드 인지도 등 기재 ○ 보유기술, 제품등의 해외 수출현황 등도 필요할 경우 기재					
재무상태 및 기업현황	구분(단위 : 억원, 명, %)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총자산	총자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비율*					
	상시 종업원 수					
	연구개발 투자액					
	신용등급					
<작성요령> ○ 공식적으로 제출가능하거나 공증된 재무제표등을 활용하여 기재 * (자기자본이익률, RO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수행중인 정부사업 현황	• 정부과제명(예산 : 억원, 소관부처명 : , 시작종료일 : 000000~111111, TRL : 00단계)					
기타	• <작성요령> ○ 기타 알고 있거나 알려야 하는 사항 기재(ex. 특구사업자들과의 관계, 가족회사 여부 등)					

## 양식 5 실증사업 추진 계획서

### 1. 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 가. 제품·서비스 개요

명칭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품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제품(서비스) 개요			

#### 나. 실증특례 신청사유 (실증특례 지원 필요성)

실증특례 신청사유의 구체적 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규	- (예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2항 - (예시) 자도로교통법 제2조

#### 다. 제품·서비스 시장 현황 및 특성

국내외 관련 시장동향	
제품(서비스) 특징 및 차별성	
제품(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유사 제품 (기업)현황	<input type="checkbox"/> 국내 및 국외에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외에 존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내에 존재 <input type="checkbox"/> 조사 해본 적 없음

#### 라. 제품·서비스 특례 추진에 따른 이용편의 및 기대효과

소비자(이용자) 편의	
기대효과	

## 2. 실증특례 시행 계획서

실증특례명			
실증 구역		지정 기간	

### 가. 실증 목적 및 대상

실증특례 목적	
실증 대상	

### 나. 시험·검증 방법

실증 항목 및 내용																																																																																																																																																					
시험·검증 항목 및 방법																																																																																																																																																					
세부 일정	<p>○ 실증일정 - 2025년 실증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0%;">요약</th> <th rowspan="2" style="width: 45%;">추진내용 및 범위</th> <th colspan="12">추진일정(월)</th> </tr> <tr> <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width: 10%;">실증준비</td> <td></td> <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td></td><td></td><td></td> </tr> <tr> <td>안전확인</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td></td><td></td><td></td> </tr> <tr> <td>성능평가</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 </tr> <tr> <td>분석</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r> <tr> <td>개선</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r> <tr> <td>결과보고</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p>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2026년 실증일정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실증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실증결과  
보고계획

실시체계

## 참고

#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현황

- (목적) 소형 e-모빌리티의 분류조건 및 기준 형평성 등의 규제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

요청 내용	현행 규제
① 4륜형 차실 설치 허용	(현황) 4륜형 전기이륜차만 차실 설치 규제 (3륜형은 가능)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등)
② 4륜형 승차정원 2인 허용	(현황) 4륜형은 3륜형보다 안전성·이동성이 우수함에도 4륜형만 승차인원을 1명으로 제한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3조(승차정원 및 최대 적재량)
③ 교환형 배터리 인증기준 완화	(현황)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 공용 배터리 형식, 성능, 용량, 전압 등이 같더라도 제조사 및 제품명이 다른 경우 재인증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대한 규정
④ 차량 중량제한 완화(승용 600→700, 화물 750→850kg 이하)	(현황) 최대차량 중량 제한(승용 600kg, 화물 750kg이하)으로 배터리 용량 증가가 불가하여 산업발전 저해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⑤ 차량 최대출력 15→20kW로 완화	(현황) 초소형전기차 출력기준 15kW 이내로 특수목적차 및 물품을 적재한 운영 한계로 산업발전 저해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분류기준)
⑥ 견인고리 설치 허용	(현황) 초소형 전기차의 적재공간 및 적재중량 제한으로 트레일러 견인이 필요하나, 견인고리 제작 설치 불가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2항
⑦ 고령친화 이동기기 자전거전용도로 및 전용도로 통행실증	(현황) 고령친화형 전동이동기기는 도로교통법 상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로 포함되어 일반도로 운행 및 면허 소지 필요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
⑧ 고령친화 이동기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현황) 고령친화 이동기기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통한 고령자의 이동권 복지 실현 및 산업 활성화 (기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3조(우수제품 등의 지정·취소) *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지정, 22.12.29
⑨ 전기자전거 분류기준 일원화	(현황) Throttle, PAS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은 동일하나 조작방식의 차이로 인한 Therottle 전기자전거가 PM 분류로 형평성 결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 부속서 72

## 6. 전북 기능성식품

#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모집개요

- (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후보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후보군)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규제자유특구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 신속확인 (법 제8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 확인"이라 한다)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실증특례 (법 제86조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법 제90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후보특구)** 지자체가 제안한 우수한 특구계획을 선정하여 내실있는 기획 및 부처협의 등을 지원함. 최종 특구 지정은 분과위, 심의위, 특구위 심의 및 평가를 거쳐 2025년 4월 발표 예정.

- 특 구 명 :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 지정기간 : 최종 특구사업자 선정 시부터 4년간('26.1.1.~'29.12.31.)

※ 법제화 진행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 주요 사업내용

No	사업명	내용
1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기준 및 규격 마련 실증
2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 공유공장을 활용한 기능성원료 및 제품 생산 운영 실증
3	AI&빅데이터 기반 건강기능식품 신속 사업화 실증	○ AI & 빅데이터 기반 기능성 원료 개발과정 간소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실증

- (신청자격)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구 지역 또는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이나 신설이 가능한 기업\* 및 기관\*\*
    - \* 대상 기업 : 일반식품/기능성 표시 식품/건강기능식품 기업, 연구개발업 기업
    - \*\* 단,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 없이도 실증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위 부여 없음)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대기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 불가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지원내용)**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지원
-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 2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 2024년 10월 14일(월)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 제출처 및 문의처 :
  - 전북특별자치도(mylife2005@korea.kr)
  - 전북테크노파크(1star@jbtp.or.kr / ☎ 063-210-2204)

## 3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필 수	1.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및 (양식2)보안각서 ※ 신청기업별 해당 항목에 맞게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에 대한 선별과정 후, 추가 필수자료 요청 예정임. 2. (양식3)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기업만)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5. (양식4)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6. (양식5)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해당시	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8.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 기관의 경우 상기 서류 중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외

#### 4 유의사항

- **(평가절차)**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기관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별도 선정평가 절차가 있을 예정임(평가 일정·방법 등은 별도 안내)
  - ※ 단,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특구사업자 및 혁신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과정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정기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음
- **(부가사항)** 특구사업자 최종 선정 시, 실증특례 수행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 발생(특구사업자 일부 부담).

#### 5 추진일정(안)

절차	추진 일정	주요 내용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24.10.14.~10.31.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공고·접수
↓		
특구사업자 모집 설명회	'24.10.18.(금요일)	규제자유특구 소개, 기능성식품 실증사업 및 제출서류 안내 장소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층 국제회의실), 14:00
↓		
특구사업자 선정위원회 및 선정 결과 통보	'24.11월초	특구사업자 서면 평가 및 결과 통보
↓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점검	'24.11~12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자문단 과제기획 점검
↓		
분과·심의·특구위원회 및 과제 최종 선정	'25.1.~4.	분과위원회 후 심의위 상정 과제 결정, 심의·특구위원회 최종 선정

\* 추진일정은 중앙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양식 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참여의향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에 특구 사업자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실증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 기본 정보

<b>혁신사업명</b>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b>특 구 위 치</b>	(익산시) 왕궁면 일원(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전주시) 장동 일원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순창군) 순창읍 일원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b>지 정 기 간</b>	▪ 특구사업자 선정 시부터 ~ 2029. 12. 31.		
<b>세부사업</b>	<b>사 업 명</b>	<b>내 용</b>	<b>신청 희망</b> ✓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원료의 일반 식품 적용기준 및 규격 마련 실증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 공유공장을 활용한 기능성원료 및 제품 생산 운영 실증	
	AI&빅데이터 기반 건강기능식품 신속 사업화 실증	○ AI & 빅데이터 기반 기능성 원료 개발과정 간소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실증	

#### □ 확인 사항

특구지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사업장(연구소, 사무소, 공장 등)을 특구 안에 설치하고, 이후 실증사업 후속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기업/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보안각서

1.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 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형태의 정보, 자료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와 명시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나 기관, 기업 관계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소 속 기 관 :

성 명 :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2029년 12월 31일까지
4. 동의거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표시)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 . .

소 속 기 관 :

대 표 자 : (인)

## 양식 4 신청기업 현황자료

신청기업/기관 현황자료						
특구사업자명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일반현황	설립일		대표자			
	주소	(유 )	특구내 위치여부		O/X	
	사업자(법인)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협단체 <input type="checkbox"/> 비영리기관 선택 ■ 표시				
	업종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자리) 활용 번호/분류명 기재				
주요생산품						
주요 수행 역할	• <작성요령> ○ 회사 전체 사업내용이 아닌 특례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역할 요약 기재					
특허 및 보유기술	특허(출원)	00개	특허(등록)	00개	보유기술	00개
	• (특허, 보유기술) <작성요령> ○ 특례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보유기술 및 특허, 기타 지식재산 등만 기재					
생산·연구시설, 보유 장비 등 현황	생산·연구 시설,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작성요령> ○ 상세 내용은 실증계획서에 작성하며 특례 및 사업관련 대표연계성 있는 것만 요약 기재					
시장 확보 역량 (기업만)	• <작성요령> ○ 주요생산품, 보유기술의 시장 경쟁력 수준, 브랜드 인지도 등 기재 ○ 보유기술, 제품 등의 해외 수출현황 등도 필요할 경우 기재					
재무상태 및 기업현황 (기업만)	구분(단위 : 억원, 명, %)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총자산	총자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비율*					
	상시 종업원 수					
	연구개발 투자액					
신용등급						
<작성요령> ○ 공식적으로 제출가능하거나 공증된 재무제표등을 활용하여 기재 * (자기자본이익률, RO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수행중인 정부사업 현황	• 정부과제명(예산 : 억원, 소관부처명 : , 시작종료일 : 000000~111111, TRL : 00단계)					
기타	• <작성요령> ○ 기타 알고 있거나 알려야 하는 사항 기재(ex. 특구사업자들과의 관계, 가족회사 여부 등)					

## 양식 5 실증사업 추진 계획서

### 1. 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 가. 제품·서비스 개요

명칭		유형	<input type="checkbox"/> 제품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선택 ■ 표시
실증대상 제품(서비스) 개요			

#### 나. 실증특례 신청사유 (실증특례 지원 필요성)

실증특례 신청사유의 구체적 내용	<input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선택 ■ 표시	
	관련법규	- (예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가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예시) 건강기능식품 가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 다. 제품·서비스 시장 현황 및 특성

국내외 관련 시장동향 (기업만)	
제품(서비스) 특징 및 차별성	
제품(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기업만)	
유사 제품 (기업)현황 (기업만)	<input type="checkbox"/> 국내 및 국외에 없음 <input type="checkbox"/> 국외에 존재 <input type="checkbox"/> 국내에 존재 <input type="checkbox"/> 조사 해본 적 없음 4개 중 중복 ■ 표시 후 아래 작성

#### 라. 제품·서비스 특례 추진에 따른 이용편의 및 기대효과

소비자(이용자) 편의	
기대효과	

## 2. 실증특례 시행 계획서

<b>실증특례명</b>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b>실증 구역</b>	전주, 익산, 순창 중 택 1	<b>지정 기간</b>	2026.1.1. ~ 2029.12.31.(4년)

### 가. 실증 목적 및 대상

<b>실증특례 목적</b>	
<b>실증 대상</b>	

### 나. 실증 방법

<b>실증 항목 및 내용</b>																																																																																																															
<b>시험·검증 항목 및 방법</b>																																																																																																															
<b>세부 일정</b>	<p>○ 실증일정</p> <p>– 2026년 실증 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0%;">요약</th> <th rowspan="2" style="width: 40%;">추진내용 및 범위</th> <th colspan="12">추진일정(월)</th> </tr> <tr> <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 </tr> </thead> <tbody> <tr> <td style="color: blue;">실증준비</td> <td></td> <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color: blue;">안전확인</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color: blue;">성능평가</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 </tr> <tr> <td style="color: blue;">분석</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r> <tr> <td style="color: blue;">개선</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r> <tr> <td style="color: blue;">결과보고</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r> </tbody> </table> <p>*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p> <p>– 2027년 실증 일정</p>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2028년 실증 일정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2029년 실증일정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참고 1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현황

구분	(세부)사업명	특례 조문 (규제 조문)	특례 주요내용
실증 특례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적용 실증	§86-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법령상 일반식품에 적용 가능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는 29종만 명시되어 있으며 이 외의 고시형 원료 추가를 위한 신청 및 인정 절차 부재</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원료 총 68종이나 이 중 29종만 일반식품에 적용 허용</li> </ul> </div>
임시 허가		§90-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4조	▶ 일반식품에 적용 가능한 고시형 원료 추가를 위한 절차 신설 및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확보된 고시형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및 기능성표시 허용
실증 특례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86-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현행 법령상 하나의 영업소에 하나의 영업자만 가능한 제조업의 제한으로 공유주방 운영업의 형태인 공유형 공장 운영 관련 영업의 종류 부재
임시 허가		§9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공유공장 운영업”을 위한 운영방식과 기준을 실증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제품생산 허용
실증 특례	AI·빅데이터 기반 건강기능식품 신속 사업화 실증	§86-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법령상 신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규격 원료 및 성분 인정을 받아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하고 원료 및 성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독성 및 기능성 확인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li> <li>▶ 기존 전통적 규제과학에 기반한 기능성소재의 기준규격 외에 AI·빅데이터 기반 실증을 통해 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소재의 기준규격과 이를 활용해 신속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의 허용</li> </ul>

## 참고 2 기술 유형별 기술성숙도(TRL) 단계 정의

-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평가
- 개발기술의 성숙도 또는 이행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화된 측정지표로, 연구개발환경(실험실, 유사환경, 실제환경), 연구개발결과물(시제품, 완제품), 기술수준(개념, 시현, 성능검증)에 따라 기술성숙도를 분류



TRL 단계		단계별 정의
기초연구	1	<b>【기초실험】</b> 기본원리발견 •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b>【개념정립】</b> 기술개념과 적용분야의 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3	<b>【기본성능검증】</b>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등
	4	<b>【부품/시스템 성능검증】</b> 연구실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는 단계 •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시제품	5	<b>【장치/시스템 시제품 제작】</b> 유사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된 공법/재료/시스템의 실험실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li> <li>•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제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li> <li>•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li> </ul>
	6	<b>【시제품 성능평가】</b> 유사 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일럿 규모(수개~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li> <li>•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생산수율, 불량률 등 제시</li> <li>•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li> <li>•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li> <li>•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li> </ul>
실용화	7	<b>【시제품 신뢰성평가】</b>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데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li> <li>• 장치 및 재료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럿 시제품을 현장평가(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li> <li>•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등</li> </ul>
	8	<b>【시제품 인증】</b>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li> </ul>
양산	9	<b>【사업화】</b> 상용제품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li> </ul>

- 기초연구, 실험, 시제품, 실용화, 양산의 R&D 5단계와 9개의 세부단계로 분류하며, 기술유형(시스템, 공법·기법, 재료·자재,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등)에 따라 TRL 단계 정의가 다름

## 7. 제주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

# 『제주 수소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 수소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 모집개요

- **(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제주 수소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가 후보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후보군)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 규제자유특구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 신속확인(법 제8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 확인”이라 한다)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실증특례 (법 제86조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법 제90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특 구 명 : 제주 수소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 지정기간 : 최종 특구사업자 선정 시부터 4년간
  - ※ 법제화 진행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 주요 사업내용

No	사업명	내용
1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b>1) 풍력발전 모사전원 이용한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b> ○ 제주도 풍력발전 모사전원(1 MW) 시스템 제작 ○ 수전해 설비 제작/설치 (1 MW) ○ 모사전원 이용 수소생산의 부하추종 운전 실증 ○ 생산된 수소의 저장 및 가압공급(30 bar, 100 Nm <sup>3</sup> /h) 설비 구축
		<b>2) LOHC 수소저장설비 구축 및 부하추종 운전 실증</b> ○ LOHC 수소화 반응시스템(50~100 Nm <sup>3</sup> /h) 구축 ○ 풍력발전량 변동에 따라 생산량이 변하는 수소의 실시간 저장 운전실증
		<b>3) LOHC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수요추종 운전 실증</b> ○ LOHC 탈수소화 반응시스템(50~100 Nm <sup>3</sup> /h) 구축 ○ 가변 수요에 따라 수소생산(추출)량을 조절하는 생산량 가변 운전 실증

- **(신청자격)**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 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위 부여 없음)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의 부도</li> <li>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li> <li>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li> <li>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li> <li>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li> <li>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li> <li>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li> <li>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li> <li>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li> </ol>

- **(지원내용)**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지원
-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 2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서(양식) 작성 후 누리집(홈페이지) 제출
- 접수기간 : 2024년 10월 14일(월)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 제출처 및 문의처 :
  -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http://www.sandboxjeju.net>
  - 제주특별자치도(gh2lee@korea.kr / ☎ 064-710-4713)
  - 제주테크노파크(dynat2@jejutp.or.kr / ☎ 064-720-2315)

## 3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필 수	1.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및 (양식 2)보안각서 ※ 신청기업별 해당 항목에 맞게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에 대한 선별과정 후, 추가 필수자료 요청 예정임. 2. (양식3)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5. (양식4)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6. (양식5)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해 당 시	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8.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 4 유의사항

- **(평가절차)**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별도의 선정평가 절차가 있을 예정임 (평가 일정·방법 등은 별도 안내)
  - ※ 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특구사업자 및 혁신사업이 중소기업부의 평가과정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정기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음
- **(부가사항)** 특구사업자 최종 선정 시, 실증특례 수행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가 발생함.

#### 5 추진일정(안)

절차	추진 일정	주요 내용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24.10.14.~10.31.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공고·접수
↓		
특구사업자 선정위원회 및 선정 결과 통보	'24.11월초	특구사업자 서면 평가 및 결과 통보
↓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점검	'24.11~12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자문단 과제기획 점검
↓		
분과·심의·특구위원회 및 과제 최종 선정	'25.1.~4.	분과위원회 후 심의위 상정 과제 결정, 심의·특구위원회 최종 선정

\* 추진일정은 중앙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양식 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 제주 수소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참여의향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 수소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에 특구 사업자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실증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 기본 정보

<b>혁신사업명</b>	제주 수소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b>특구 위치</b>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내(구좌읍 해맞이해안로 200)		
<b>지정 기간</b>	▪ 특구사업자 선정 시부터 ~ 2029. 12. 31.		
<b>세부사업</b>	<b>사업명</b>	<b>내용</b>	<b>신청의향</b> √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b>1) 풍력발전 모사전원 이용한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b> ○ 제주도 풍력발전 모사전원(1 MW) 시스템 제작 ○ 수전해 설비 제작/설치 (1 MW) ○ 모사전원 이용 수소생산의 부하추종 운전 실증 ○ 생산된 수소의 저장 및 가압공급(30 bar, 100 Nm <sup>3</sup> /h) 설비 구축	
		<b>2) LOHC 수소저장설비 구축 및 부하추종 운전 실증</b> ○ LOHC 수소화 반응시스템(50~100 Nm <sup>3</sup> /h) 구축 ○ 풍력발전량 변동에 따라 생산량이 변하는 수소의 실시간 저장 운전실증	
		<b>3) LOHC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수요추종 운전 실증</b> ○ LOHC 탈수소화 반응시스템(50~100 Nm <sup>3</sup> /h) 구축 ○ 가변 수요에 따라 수소생산(추출)량을 조절하는 생산량 가변 운전실증	

### □ 확인 사항

특구지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사업장(연구소, 사무소, 공장 등)을 특구 안에 설치하고, 이후 실증사업 후속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보안각서

1.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 수소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형태의 정보, 자료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명시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나 기관, 기업 관계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소 속 기 관 :

성 명 :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수소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사업」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2029년 12월 31일까지
4. 동의거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표시)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 . .

소속기관 :

대표자 : (인)

## 양식 4 신청기업 현황자료

신청기업 현황자료						
특구사업자명	<제주 수소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사업> 신청 기업명 작성					
일반현황	설립일			대표자		
	주소	(우 )		특구내 위치여부	O/X	
	사업자(법인)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협단체 <input type="checkbox"/> 비영리기관 <input type="checkbox"/> 개인 선택 ■ 표시				
	업종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자리) 활용 번호/분류명 기재				
주요생산품						
주요수행역할	<작성요령> ○ 회사 전체 사업내용이 아닌 특례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역할 요약 기재					
특허 및 보유기술	특허(출원)	00개	특허(등록)	00개	보유기술	00개
	• (특허, 보유기술) <작성요령> ○ 특례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보유기술 및 특허, 기타 지식재산 등만 기재					
생산·연구시설, 보유 장비 등 현황	생산·연구 시설,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작성요령> ○ 상세 내용은 실증계획서에 작성하며 특례 및 사업관련 대표연계성 있는 것만 요약 기재					
시장 확보 역량	• <작성요령> ○ 주요생산품, 보유기술의 시장 경쟁력 수준, 브랜드 인지도 등 기재 ○ 보유기술, 제품등의 해외 수출현황 등도 필요할 경우 기재					
재무상태 및 기업현황	구분(단위 : 억원, 명, %)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총자산	총자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비율*					
	상시 종업원 수					
	연구개발 투자액					
	신용등급					
<작성요령> ○ 공식적으로 제출가능하거나 공증된 재무제표등을 활용하여 기재 * (자기자본이익률, RO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수행 중인 정부사업 현황	• 정부과제명(예산 : 억원, 소관부처명 : , 시작종료일 : 000000~111111, TRL : 00단계)					
기타	• <작성요령> ○ 기타 알고 있거나 알려야 하는 사항 기재(ex. 특구사업자들과의 관계, 가족회사 여부 등)					

## 양식 5 실증사업 추진 계획서

### 1. 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 가. 제품·서비스 개요

명칭		유형	<input type="checkbox"/> 제품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선택 ■ 표시
실증대상 제품(서비스) 개요			

#### 나. 실증특례 신청사유 (실증특례 지원 필요성)

실증특례 신청사유의 구체적 내용	<input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선택 ■ 표시	
	관련법규	- (예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예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 다. 제품·서비스 시장 현황 및 특성

국내외 관련 시장동향	
제품(서비스) 특징 및 차별성	
제품(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유사 제품 (기업)현황	<input type="checkbox"/> 국내 및 국외에 없음 <input type="checkbox"/> 국외에 존재 <input type="checkbox"/> 국내에 존재 <input type="checkbox"/> 조사 해본 적 없음 4개 중 중복 ■ 표시 후 아래 작성

#### 라. 제품·서비스 특례 추진에 따른 이용편의 및 기대효과

소비자(이용자) 편의	
기대효과	

## 2. 실증특례 시행 계획서

<b>실증특례명</b>	제주 수소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b>실증 구역</b>		<b>지정 기간</b>	2026.1.1. ~ 2029.12.31.(4년)

### 가. 실증 목적 및 대상

<b>실증특례 목적</b>	
<b>실증 대상</b>	

### 나. 실증 방법

<b>실증 항목 및 내용</b>																																																																																																															
<b>시험·검증 항목 및 방법</b>																																																																																																															
<b>세부 일정</b>	<p>○ 실증일정</p> <p>– 2026년 실증 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요약</th> <th rowspan="2">추진내용 및 범위</th> <th colspan="12">추진일정(월)</th> </tr> <tr> <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 </tr> </thead> <tbody> <tr> <td style="color: blue;">실증준비</td> <td></td> <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color: blue;">안전확인</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color: blue;">성능평가</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 </tr> <tr> <td style="color: blue;">분석</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r> <tr> <td style="color: blue;">개선</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r> <tr> <td style="color: blue;">결과보고</td>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r> </tbody> </table> <p>*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p> <p>– 2027년 실증 일정</p>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2028년 실증 일정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2029년 실증일정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규제 특례 종류: 실증 특례 1건

○ 특례내용 : LOHC 수소저장/추출 설비에 의한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및 실증

<관련법령 요약>

관련법령	상세기준	신설(개정) 상세기준(안)
수소법제 36조, 44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5조, 39조	KGS AH171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LOHC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마련

○ 현행규제

- 개정 수소법에 의하면 모든 수소 추출설비는 인허가 및 검사가 필수이지만, 수소 추출설비는 수소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제시하는 상세기준(KGS AH171)에 의한 수소 추출설비만 허용됨

• 관련법령: 수소법제 36조, 44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5조,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KGS AH171 등에 따르면, LOHC 수소추출설비에 대한 적합한 기준이 부재함

○ 관련법령 : 수소법 시행규칙 별표1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 시설기준

가.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라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추어 것. 다만, 허가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생산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문생산업체가 제조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허가관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참고 2 기술 유형별 기술성숙도(TRL) 단계 정의

-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평가
  - 개발기술의 성숙도 또는 이행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화된 측정지표로, 연구개발환경(실험실, 유사환경, 실제환경), 연구개발결과물(시제품, 완제품), 기술수준(개념, 시현, 성능검증)에 따라 기술성숙도를 분류



TRL 단계		단계별 정의
기초연구	1	<b>【기초실험】</b> 기본원리발견 •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b>【개념정립】</b> 기술개념과 적용분야의 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3	<b>【기본성능검증】</b>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등
	4	<b>【부품/시스템 성능검증】</b> 연구실 환경에서의 Working •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는 단계 •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Model 개발	
시제품	5	<b>【장치/시스템 시제품 제작】</b> 유사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된 공법/재료/시스템의 실험실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li> <li>•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제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li> <li>•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li> </ul>
	6	<b>【시제품 성능평가】</b> 유사 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일럿 규모(수개~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li> <li>•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생산수율, 불량률 등 제시</li> <li>•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li> <li>•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li> <li>•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li> </ul>
실용화	7	<b>【시제품 신뢰성평가】</b>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데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li> <li>• 장치 및 재료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럿 시제품을 현장평가(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li> <li>•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등</li> </ul>
	8	<b>【시제품 인증】</b>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li> </ul>
양산	9	<b>【사업화】</b> 상용제품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li> </ul>

- 기초연구, 실험, 시제품, 실용화, 양산의 R&D 5단계와 9개의 세부단계로 분류하며, 기술유형(시스템, 공법·기법, 재료·자재,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등)에 따라 TRL 단계 정의가 다름